

# '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심사보고서

1999. 10. 8.

총무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10월 2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6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('99.10. 8.) 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 은 규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,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,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'99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아래의 재산을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에 활용하기 위하여 '99년도에 취득하려는 것임.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천원)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고
	지목	소재지	면적(㎡)					
1	대지	아현동85-108	209	373,120	4/4	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	동교동 180-20 (주) 지학사	
2	건물	의 2필지	361.1	65,000	분기			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동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.
- 지난 '97년도 제48회 임시회에서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되어 의결됨에 따라 아현동 85 - 104호의 2필지상의 대지 311㎡(94.2평)를 평당 약 414만원인 3억 9,040만원에 '98. 12. 4.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매입한 바 있으나, 취득한 대지만으로는 어린이집을 건립하기에 협소하여 동 대지와 접해 있는 아현동 85 - 108호의 2필지상의 대지 209㎡(63.3평)와 건물 연면적 361.1㎡(109.4평)를 추가로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유남결 위원) : 우리구 관내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나 되며,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어느 어느 동인가?
- 답변요지(박왕희 사회복지과장) :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은 26개소이며,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아현1동, 공덕2동, 도화2동임.
- 질의요지(유남결 위원) : 앞으로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우선적으로 건립해 주되, 건립 예산은 가급적 시 교부금을 받아 건립토록 하고,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 예산으로라도 연차적으로 건립해 주길 바람.
- 답변요지(박왕희 사회복지과장) : 노력하겠음.
- 질의요지(김영식 위원) :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는 '98.12.4. 평당 414만원에 계약 체결 매입한 바 있으나, 금번 추가로 매입예정인 인접부지 아현동 85번지 108호 지상토지는 평당 약 59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, 공시지가로 계상한 금액인가?
- 답변요지(이은규 재무과장) :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평평가에 의한 감정가임.
- 질의요지(김영식 위원) : 어린이집이 없는 도화2동에 지난번 매각한 도화2동 청사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했다면 새로이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데?
- 답변요지(이은규 재무과장) : 차후 잡종재산 매각시에는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 안 의 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## '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:1999.10.

제 출 자:마포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,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,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'99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### 2. 주요골자

아래의 재산을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에 활용하기 위하여 '99년도에 취득하려는 것임.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천원)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, 성명	비고
	지목	소 제 지	면적(m <sup>2</sup> )					
1	대지	아현동85-108	209	373,120	4 / 4 분기	아현1동 어 린이집 건립 부지	동교동 180-20 (주) 지 학 사	
2	건물	의 2필지	361.1	65,000				

### 3. 근 거

- 지방자치법(1999. 2. 8 법률제5893호) 제35조제1항제6호, 제7호
- 지방재정법(1999.5.24법률제5982호) 제77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(1999. 4.30 대통령령 제16267호) 제84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(1999. 1.16 조례 제408호) 제36조, 제37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조례시행규칙(1998.12.31 규칙 제289호) 제29조

(별지 제30호 서식)

# 구유재산관리계획

## 연도관리 계획 총괄표(6-1)

회계명 :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구 분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 득	계	토지			3	209	373,120	3	209	373,120	
		건물			1	361.1	65,000	1	361.1	65,000	
		기타									
	1. 매입	토지			3	209	373,120	3	209	373,120	
		건물			1	361.1	65,000	1	361.1	65,000	
		기타									
특	2. 교환	토지									
	으로	건물									
	취득	기타									
처 분	3. 기타	토지									
	취득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분	4. 매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5. 양여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분	6. 교환	토지									
	으로	건물									
	처분	기타									

연도관리 계획 총괄표(6-2)

회계명 :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 표시			추 정 가 격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소유 자 주소·성명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	
1	대지	아현동 85-108외	209	373,120	4/4분기	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	동교동 180-20 (주) 지학사	매입
2	건물	2필지	361.1	65,000				

1.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2.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·취득재산  
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수 있다.
3.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4. 기타 작성요령은 "양식 6-4"를 참조